

1. ③ - 지방세법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지법 35 ①). , 다음연도 3월이 아닌 해당연도 12월까지 일괄신고 납부하면 10%의 세액을 공제한다.

2. ③ - 지방세법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세법상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의 나머지 세목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가 있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지법 21 ②).

(2) 담배소비세

1) 10% 가산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④ 또는 ⑤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의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말함)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④ 및 ⑤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지법 61 ①).

①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②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④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⑤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30% 가산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지법 61 ②).

①미납세반출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②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제공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③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⑤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4) 레저세

납세의무자가 레저세의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지법 45 ②).

3. ① - 지방세법

세액이 6천원 미만인 때에는 6천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법 28 ①)

4. ① -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지법 152 ②).

5. ② - 지방세기본법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인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지기법 123 ①).

6. ③ - 지방세법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지법 107 ①②)

주택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재산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지법 115 ①). 즉, 건물은 7월말 토지는 9월말까지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

7. ② - 지방세법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법 153 ①).

8. ④ - 지방세기본법

해당 지문은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는다.

용어의 정의(지기법 2 ①)

(1) 가산세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가산금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9. ④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지기법 36 ①).

10. ② - 지방세법

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 경우 :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④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세무서장 등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에 따른 기한 내에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지법 103의59).

구 분		기 한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후신고는 제외) 받은 경우	① 일반적인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②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③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2)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단, 아래 4)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가능)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① 일반적인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②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6)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7)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11. ① - 지방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법 77)

12. ①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지법 7, 8).

구 분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시세·광역시세	구세	도세	시·군세
보통세	① 취득세 ② 레저세 ③ 담배소비세 ④ 지방소비세 ⑤ 주민세 ⑥ 지방소득세 ⑦ 자동차세	① 등록면허세 ② 재산세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레저세 ④ 지방소비세	① 담배소비세 ② 주민세 ③ 지방소득세 ④ 재산세 ⑤ 자동차세
목적세	① 지역자원시설세 ② 지방교육세		① 지역자원시설세 ② 지방교육세	

13. ④ - 지방세법

①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법 49)

②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지법 54 ①).

③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지법 47).

14. ③ - 지방세법

①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지법 125 ③).

②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지법 136 ②).

④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동체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지법 133).

15. ② - 지방세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단,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제외) (지법 146 ① ④).

③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지법 147).

④ 지방자치단체가 온천을 개발하여 그 용수를 목욕탕을 경영하는 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된다. (지기통 145 - 1).

16. ① - 지방세법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지기법 53).

17. ④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지특법 4 ④).

18. ④ - 지방세법

④「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령 20 ⑦).

19. ② - 지방세기본법

다음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시기에 성립한다(지기법 34 ②).

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②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0. ③ - 지방세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지법 109 ②).